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33
----------	-------

발의연월일 : 2025. 7. 2.

발 의 자 : 김석기 · 임이자 · 나경원
김기웅 · 이인선 · 성일중
윤상현 · 김태호 · 김용태
인요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주관기관” 및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시행기관”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기관이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을 제공받는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의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고, 사업 선정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를 존중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추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개발도상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공정한 국제개발협력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보고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필요한”을 “필요한 지원을 위원회에 요청하거나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필요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으로,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주관기관은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를 존중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추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①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합기본계획, 종합시행계획 및 제15조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u>보고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u> <u><신 설></u>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① ----- ----- ----- ----- ----- ----- ----- <u>보고하여야 한다.</u>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u>필요한</u>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u>주관기관은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를 존중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추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u>
③ 위원회는 <u>필요한</u> 경우 제1	③ -----제1항 및 제2항----- --- <u>필요한 지원을 위원회에 요청하거나 필요한</u>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항</u> 에 따른 주관기관의 점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u>점검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 전 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1항 및 제2항-----</u> .
--	--